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선 건의

## I 현 황

-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25.7.18)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외부 전문업체 위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을 예방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통신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관리 대상에는 구내통신설비, CCTV, 네트워크설비, 방송설비, 출입통제 설비 및 스마트 공장 시스템 등 총 34개 공종설비가 포함되며, 관리주체는 반기별 유지관리 점검과 연 1회 이상 성능점검 및 관련 기록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히 2026년 7월 제도 시행 유예기한 종료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상당수 중소 제조기업이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제도시행 유예기한

구 분		유 예 기 한
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7. 18
②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8
③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7. 18

-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행 기준이 제조업 현장의 실제 설비 규모와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 수용성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II 기업 애로사항

### 1. 기존 유지관리 체계와의 중복 부담 우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은 시스템 안정성과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해 이미 전문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지관리 의무가 추가될 경우, 기존 민간 유지관리 체계와 별도로 행정절차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른 실제 수리 역시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관리체계 중복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2.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

- 대형 데이터센터 등은 장애 발생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반면, 제조업 공장의 경우 사용 목적과 위험도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또한 제조업 공장은 생산동·창고동·부속동 등으로 분산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정보통신설비 역시 내부 업무망·CCTV·생산공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제 정보통신설비의 운영 특성이나 위험도보다 건축물 연면적 중심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복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설비 규모와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지방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 지방 중소기업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며, 수도권 대비 인력 수급 여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 더불어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인력 채용이나 외부 위탁 시 비용 증가는 중소기업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Ⅲ 건 의 사 항

- 최근 내수 부진과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 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에 ①연면적 1만 $m^2$  이상 3만 $m^2$  미만 건축물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2027년 7월 18일까지 1년 연장하고, 연면적 5천 $m^2$  이상 1만 $m^2$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 유예기간을 2028년 7월 18일까지 1년 연장하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제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②현행 연면적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실제 정보통신설비 규모와 운영 특성, 위험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고, 복수 건축물 연면적 합산 적용 시에도 제조업 공장의 운영 특성과 실제 설비 현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기준 적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③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④제도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행정지도와 현장 컨설팅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 정 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 정 태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 원 요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조 성 용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최 종 필

김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윤 권